



대 전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5누420 기술거래사 등록면허세 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 A
피고, 피항소인 ○○광역시○구청장
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. 5. 28. 선고 2023구합742 판결
변 론 종 결 2025. 9. 4.
판 결 선 고 2025. 9. 25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. 12. 16. 자 등록면허세 135,000원, 2022. 1. 5. 자 등록면허세 27,000원의 기술거래면허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.
(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정정하였다)

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,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약어 및 별지 포함).

- 추가하는 부분 -

○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말미에 "이 사건 면허의 등록증은 2024. 4. 1. 자로 작성되었다"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.

『원고는, 기술거래사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사등록증 원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그 원본을 분실하였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○○○○○○ 진흥원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의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, 원고가 향후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술거래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(원고가 제출한 2025. 9. 5. 자 참고서면 참조),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이 사건 면허의 등록취소를 시도하였으나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, 원고가 용이하게 이 사건 면허의 등록취소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.』



2.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는, ○○○○○○진흥원이 자격증 과세유무 변경이나 관리운영기관의 변경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고 현재까지 기술거래사등록관리요령에 따른 ○○○○부장관의 거래사등록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,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허로 인한 납세의무를 전혀 알 수도 없었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.

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면허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○○○○○○부장관에게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고 ○○○○○○진흥원이 이를 관리하면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,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[별표 1]에 따르면 기술거래사의 등록이 면허세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, 실제로 ○○○○○○진흥원 등이 기술거래사등록증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만을 면허세 부과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원고는,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면허의 관리 주체가 종국적으로 ○○○○○○진흥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○○○○○○진흥원이 장기간 원고에게 자격증의 존속 유무 등에 관한 어떠한 의사 타진도 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 및 행정절차법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,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,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.

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,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.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



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(疑意)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(대법원 2025. 6. 12. 선고 2024두66181 판결 참조).

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의무세의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문○○

판사 이○○

판사 신○○